

| 신청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적가치구현부

일본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제고를 위한 각종 법안 현황 –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법을 중심으로

김 잔 디

오사카대학교 초빙연구원

I. 들어가는 말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형성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달성을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⁰¹는 이러한 실현 의지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⁰²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하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법, 즉 동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⁰³

동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본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해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①인권의 보호, ②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 유지, ③보건복지의 제공, ④노동권의 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통합, ⑤양질의 일자리 창출,

⁰¹ 2017년 10월 26일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⁰² 김정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에 관한 시론적 연구: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7권 제1호, 2018, 58쪽.

⁰³ 박광온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5, 1쪽 이하.

⑥지역사회의 활성화, ⑦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⑧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포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제정 및 방향성에 대해 검토함에 있어 참고가 되는 일본의 법률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단, 동법과 동일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 개혁 추진법(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4号’ 및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관하여

1990년 초반 버블 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의 경제는 장기간 침체되었다. 또한 저출산(少子化)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1994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초과하게 되어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 보장 구조 개혁으로서 연금제도 개혁, 개호(介護)보험제도 개혁, 고령자 의료제도 개혁이 실시되어 각 제도의 유지 가능성이 향상되었으나 저출산 문제에 관한 대책이 늦어지게 되어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 의료·개호 현장의 피폐, 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 대책 기능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국민회의(2008년), 안심사회실현회의(2009년)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안심사회실현회의에서는 사회보장(연금, 의료·개호, 차세대 육성), 고용, 교육의 연계를 토대로 안심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⁰⁴. 또한 저출산 문제에 관한 대책으로서 2007년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09년 세제(稅制) 개정법 부칙 제104조에서는 2011년까지 소비세의 전액을 ‘제도로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개호의 사회보장 급부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위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명기하였다.

⁰⁴ 根岸陸史「社会保障制度改革の課題と今後の展望—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報告書とプログラム法案の骨子—」立法と調査第345号 (2013) 54頁。

또한 민주당(2009년 9월 발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심사회실현회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0년 10월에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유직자 검토회가 설치되었고, 동시에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세제 개정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2011년 7월에는 ‘사회보장·세 일체 개혁 성안(社会保障·税一体改革成案)’이 각의 보고되었으며, 2012년 2월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사회보장·세 일체 개혁 대망(社会保障·税一体改革大綱, 이하 ‘일체개혁대망’으로 표기))이 국회에 제출되었다.⁰⁵ 동 법안은 집중 심의 및 중의원의 수정을 거쳐 2012년 8월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되었다.⁰⁶ 동 법안의 성립에 의해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세제 개혁 관련 법안 및 아동, 육아 지원 관련 법안, 연금 관련 법안 등이 제정되어 소비세수(消費稅収)는 사회보장을 위하여 재원화되었고, 인상된 소비세의 활용 용도로 아동, 육아 지원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기초연금의 국채 부담 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인상하는 것,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적 급부를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2012년 6월 자유민주당, 공명당, 민주당(이하 ‘3당’으로 표기 함)의 합의를 거쳐 3당이 제안한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10일에 성립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이하 ‘개혁추진법’으로 표기함)에 의하면 정부는 개혁추진법에 규정된 기본적 이념 및 방침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을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민회의⁰⁷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동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개설하고자 한다.

⁰⁵ 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報告書—確かな社会保障を将来世代に伝えるための道筋」(2013) 1頁。

⁰⁶ 根岸陸史, 앞의 논문, 55쪽.

⁰⁷ 국민회의의 사명은 폭 넓은 관점에서 개혁추진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이념이나 방침 등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III.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1. 기본적 이념⁰⁸

(1) 自助·共助·公助의 적절한 조합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自助·共助·公助의 적절한 조화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즉 국민은 일하고 생활하며,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유지한다는 ‘自助’를 기본으로 하면서, 고령 및 질병·개호 등 생활상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회연대 정신을 토대로 공동으로 리스크에 대처하는 구조인 ‘共助’가 自助를 지탱한다. 또한 自助·共助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수급 요건을 정하여 필요한 생활보장을 지원하는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 등의 ‘公助’가 보완하는 구조이다. 이 때 ‘共助’는 국민의 참가의식이나 권리의식을 확보하고 부담의 보상으로써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험방식이 기본이지만 이것은 自助를 공동화한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보험, 연금 등의 ‘自助의 공동화’로서의 사회보험제도가 기본이고, 국가의 책무로서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부조 등의 ‘公助’는 自助·共助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1950년의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권고에도 명기되어 있다.⁰⁹

(2) 사회보장기능 충실과 급부의 중점화·효율화, 부담 증가의 억제

사회보장과 경제·재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생산연령인구(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경제 침체 및 글로벌화의 진행, 가족·지역의 부양기능 저하, 비정규고용 노동자의 증가에 의한 고용환경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보장의 안정 재원을 확보함과 동

⁰⁸ 개혁추진법 제2조 사회보장제도개혁은 다음의 사항을 기본으로 행해진다. 1 自助, 共助 및 公助가 가장 적절히 조합되도록 유의하며 국민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상호 및 국민 상호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그 실현을 지원한다. 2 사회보장의 기능 충실과 급부의 중점화 및 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행하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부담의 증대를 억제하며 지속 가능한 제도 실현을 한다. 3 연금, 의료 및 개호에 관해서는 사회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은 사회보험료에 관한 국민 부담의 적정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국민이 널리 수익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비용을 모든 세대의 공평한 분배의 관점 등으로부터 사회보장급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의 주요한 재원은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⁰⁹ 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 앞의 보고서, 2쪽 이하.

시에 사회보장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의 인상이 불가피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동일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급부의 중점화·효율화가 요구되었다.

(3) 사회보험방식의 의의

국민보험·연금은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이나 공적 연금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본의 사회보장의 핵심으로 국민생활을 지지해왔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 급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적인 측면이 강하며, 세금과 비교하여 급부와 부담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회보험방식의 단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연금제도의 실현을 위해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면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모든 국민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로 충당되지만 실제로 사회보험제도에는 많은 공비(세제재원)가 투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에는 국비가 2분의 1 정도 투입되어 있으며, 자영업자 및 연금수급자 등의 무직자 등이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2분의 1 정도 투입되어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협회의 급부비에도 일부 국비가 투입되어 있다.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나 연금제도는 피용자(被用者)보험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고, 의료보험제도는 각 그룹마다 보험자가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은 무직자나 저소득자에게도 의료보험제도나 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에 공비를 투입시킴으로써 무직자나 저소득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 수준을 인하하고 있다.

(4) 공평한 급부와 부담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고용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고령자세대가 급부를

받고, 현역 세대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세대가 공평한 급부·부담을 할 수 있도록, 즉 세대 간의 공평한 급부·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 중인 세대들과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생활하며, 장래에 대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개혁추진법¹⁰의 내용

개혁추진법에는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우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동법 제3조). 그리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주체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 회의(이하 ‘국민회의’로 표기 함)’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동법 제4조).

동법 제2장(제5조~제8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개혁의 기본방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적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저출산 대책으로 크게 구분한 후 각 분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기본방침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 고도의 의료기술의 보급 등에 의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는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시키기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이고 착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한 후,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각 단계에서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대기아동¹¹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¹⁰ 동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사회보장제도개혁의 기본방침(제5조~제8조), 제3장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제9조~제1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¹¹ 보육소, 유치원 등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을 한 보호자의 아동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보육소 등에 들어가지 못한 아동을 의미한다.

동법 제3장(제9조~제15조)에서는 국민회의의 설치, 조직, 자료의 제출, 사무국, 설치 기한, 주임의 대신, 정령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사회보장·세 일체 개혁과 그 외의 주요 방침이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의 기본적 이념 및 기본 방침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내각에 국민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회의는 위원 12명 이내로 조직되며, 국가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국민회의의 요구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회의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IV. 기타 관련 법령¹²

1.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은 국민회의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개혁추진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한 “법률상의 조치”의 골자에 대해’에 관한 각의결정으로 성립되었다. 동법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개혁의 전체상·진행방법을 명시하는 것이며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강구해야 할 사회보장제도개혁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즉 수익과 부담의 균형이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의료제도, 개호보험제도 등의 개혁을 위하여 ①검토해야 할 사항, ②개혁의 실시 기간과 적절한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였다. 동법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 의료제도, 개호보험제도, 공적연금제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출산 대책인 아동·육아관련법, 대기아동 해소 및 가족화 계획의 착실한 실시, 의료제도에 관해서는 병상 기능 보고제도의 창설 및 지역 의료 제공 체제 구상에 의한 병상기능 분화 및 연계, 난병에 대한 대책을, 개호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지역 포괄 케어 추진 및 저소득자 개호보험료 경감을, 공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연금관련법의 착실한 실시 등의 조치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상기의 조치의 원활한 실시와 수익과

¹² 01하 厚生労働省「社会保障制度改革の実施状況と今後の進め方（参考資料）」（2014） 참조하여 작성.

부담이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검토를 위해 관계 관료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 본부’와 유직자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 회의’를 설치하였다.

2. 차대(次代)의 사회를 담당하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세대육성 지원대책추진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동 법률안에 의한 주요 개정 사항은 이하와 같다. 첫째, 다음 세대의 사회를 책임지게 되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지역 등에 있어서 육아에 편의를 고려한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10년) 연장하였다. 둘째,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였다. 도도부현 등에 의한 모자(母子)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조치를 적극적·계획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연계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 모자가정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자(父子) 가정에 대해서는 이상의 지원과 더불어 부자 복지 자금 제도¹³를 창설하여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법률 명을 ‘모자 및 부자, 과부 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공적 연금 급부 등의 수급자 등에 대해 공적 연금 급부 등의 금액에 따라 아동부양수당의 금액을 일부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3. 고용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동 법률안은 현재의 고용 현황을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기본수당, 취업 촉진 수당, 교육 훈련 급부 및 육아 휴직 급부의 확충, 잠정 조치의 신설 및 연장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개시 전 임금에 대한 급부 비율을 50%에서 67%로 인상했다(2014년 4월 1일 시행). 또한 교육 훈련 급부금을 확충하고 교육 훈련 지원 급부금을 창설했다(2014년 10월 1일 시행). 즉 교육 훈련 급부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인 캐리어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실천적인 교육훈련으로써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강좌

¹³ 부자가정에 대한 등록금, 생활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 등이 있다.

를 수강하는 경우의 급부금률 인상¹⁴하였고,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하는 경우 수강비용의 20%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훈련지원급부금을 창설하여 45세 미만의 이직자가 상기의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중에 이직 전 임금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기본 수당의 반액)을 급부한다(2018년까지의 잠정 조치).

4.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

동 법률안은 개혁추진법을 토대로 한 조치로서 효율적이고 양질의 의료 제공 체제와 포괄적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의료 및 개호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호보험법 등의 관계 법률의 정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도도부현의 사업 계획에 기재된 의료·개호의 사업을 위하여 소비세증수분을 활용한 새로운 기금을 도도부현에 설치하고, 둘째, 의료와 개호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후생노동 대신이 기본적인 방책을 책정하고, 셋째, 의료기관이 도도부현 지사에게 병상의 의료기능 등을 보고하고 도도부현을 이를 토대로 지역의료구상을 의료계획에 책정하고, 넷째,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의료 재단 센터의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과 공평한 기능분담을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다.

5. 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안

동 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을 토대로 난병(難病)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의료비를 소비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공평하고 안정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15년 1월 1일 시행). 또한 이러한 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의 책정, 조시 및 연구의 추진, 요양생활 환경 정비 사업의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후생노동 대신은 난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및 난병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방침을 책정해야 하고¹⁵, 둘째, 국가는 난병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¹⁴ 개정 전 수강 비용의 20%를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40%를 지급하게 되었다.

¹⁵ 구체적으로는 ①도도부현 지사는 신청을 있을 때 의료비 조성 대상의 난병 환자에 대해 의료지를 지급한다. ②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난병에 관한 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지급인정의 신청에 첨부하는 진단서는 지정의가 작성한다. ④도도부현은 신청

셋째, 도도부현은 난병 상담 지원 센터의 설립 및 방문간호의 확충 등 요양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동 법률안은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에 의거한 조치로서 소아만성특정질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소비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2015년 1월 1일 시행).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우선 적절한 소아만성특정질병 의료지원의 실시와 기타 질병이 있는 아동 등의 전전한 육성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소아만성특정질병과 관련한 의료비조성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¹⁶

V. 나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이루어진 사회의 실현이 기대된다. 동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 않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참고가 되는 일본의 관련 법률을 소개하였다.

일본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 의료, 개호 등의 사회보자급부는 이미 연간 100조 엔을 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담 및 현역 세대의 보험료 및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되었다. 반면 다수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고령화 사회의 촉

이 있는 경우에 지급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지정난병심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의료비 지급을 요하는 비용은 도도부현이 지불하고 국가는 그 2분의 1을 부담한다.

¹⁶ 의료비조성제도에 관하여 ①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핵심시는 소아만성특정질병에 걸린 아동 등으로 당해 질병의 정도가 일정 정도 이상인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신청을 토대로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②의료비조성을 위한 비용은 도도부현 등의 지불하고 국가는 그 2분의 1을 부담한다. ③기타 적절한 의료비조성 및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의료기관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진에 크게 공헌한 것은 일본의 충실향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보험, 개호보험으로 인하여 누구나 적절한 의료·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수명이 연장되었고, 연금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으로 고령기 생활을 지지하여 장수의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가 사회보장제도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동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에 관한 시론적 연구: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보 제17권 제1호, 2018.

박광은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5.

根岸陸史「社会保障制度改革の課題と今後の展望—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報告書とプログラム法案の骨子—」立法と調査第345号 (2013).

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報告書—確かな社会保障を将来世代に伝えるための道筋」(2013).

厚生労働省「社会保障制度改革の実施状況と今後の進め方 (参考資料)」(2014).